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5. 12.

행정위원회

1. 審 査 經 過.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11월 17일 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21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2005년 12월 5일

제115회(정례회) 제3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

2. 提 案 說 明 的 要 旨 (제안설명자 행정국장 경진)

가. 개정이유

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,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, 민원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(안 제13조)

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 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,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

○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(안 제15조)

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

○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(안 제16조)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.

○ 특별휴가의 조정(안 제24조)

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, 포상휴가·장기제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, 경조사와 관련된

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, 배우자의 출산, 배우자·부모·조부모·외조부모·
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, 휴가일수를 축소함.

○ 공무원의 범위(제30조 신설)

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.

- 지방의회의원
-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

다. 참고사항

- 구청장 방침 746(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계획, 2005.10.13.)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합의사항 : 필요 없음
- 입법예고(2005.10.20. ~ 2005.11.08.) 결과 : 의견 없음

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김찬제)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개정된 지방공무원복무
규정,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복무조례 개정지침 및 표준 조례안에
의거 통일적으로 적용된 것이고,
- 관련법규의 개정취지에 부합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사례가
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審査結果 : 原案可決